

---

# 2018년 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18.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 4.(목) 10:00 ~ 11:20
- ◆ 장 소 : 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행정국장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 (2018-1)목동지구 종세분화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양천구청이 제출한 시·구 합동보고회 자료
  - (2018-2)2017년 10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세부내역서, 입금은행명 및 계좌번호
  - (2018-3)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보고서 등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기각
  - 부분인용
  - 기각

【 의안번호 2018-1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04년 종세분화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최재희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성춘 일 위원님, 이유진 위원님, 전진한 위원님, 그 다음에 황인식 국장님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2018-1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소관 부서 팀장, 주무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소관 부서 팀장,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장 ○○○입니다.

〈○○○ 팀장〉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 사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1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목동 1, 2, 3단지 종세분화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종세분화 매뉴얼 기준 등 6항의 정보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양천구청이 제출한 시·구 합동보고회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하고,
- 종세분화 매뉴얼, 업무처리지침, 종하향 관련 공문에 대해서는 사본 제공, 도시계획위원회 및 종하향 사유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청구 시 본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전자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께서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별 다른 것이 없으면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청구인이 오셔서 보면 열람이 되는 것이죠?

<○○○ 팀장>

- 네, 열람되십니다.

<○○○ 위원>

-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팀장>

- 직원 입회 하에 열람을 하고 있고요, 못 찍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행령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비공개 자료 중에 목동지구 택지개발 PPT자료,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자료죠?

<○○○ 주무관>

- 네, 도시관리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제가 이 자료 봤는데 비공개를 왜 하셔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무관>

- 지금 이 자료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양천구청

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초기 구상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구합동보고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양천구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다시 열람공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 과정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청의 구상안이고, 검토과정에서 이 구상안과 실제 개발이 달라지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 이 보고회에 주로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 주무관>

○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외부위원들하고요,

<○○○ 위원>

○ 동네 주민들은 참석 안 했습니까?

<○○○ 주무관>

○ 주민들은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 지역주민이 이 청구를 하신 것이죠?

<○○○ 팀장>

○ 주소로 보면 현재 ○○시 ○○구에 사시는 분이 공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 위원>

○ 청구를 왜 하셨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팀장>

○ 개인 사생활 부분이어서 여쭙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 이 자료를 전체 다 비공개하셔야 됩니까?

<○○○ 주무관>

○ 일단은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인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 위원>

○ 내부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 주무관>

○ 시·구 합동보고회가 지난번에 1차로 6월 달에 있었고 차후에 구청에서 안을 좀 다듬어서 다시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내부검토 과정 때문에 5호로 비공개하시면 언제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쯤이십니까?

<○○○ 주무관>

○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데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시·구 합동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열람공고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듬어서 사전자문을 받게 됩니다.

사전자문 이후에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초기안에 대해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

○ 다음 시·구 합동보고회 예정일은 지금 아직 계획된 것이 없으십니까?

<○○○ 주무관>

○ 네, 2차로 한 번 더 재자문을 해야 되는데 일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고층아파트 호별 비율은 아직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것 없으신 겁니까?

<○○○ 팀장>

○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위원>

○ 제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히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날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업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전체적인 일정이야 입안권자가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시·구 합동보고회에서 재자문 의견이 나와서 다시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 이 과정도 도시계획의 하나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렇습니다.

〈○○○ 위원〉

○ 도시계획은 시작하면서 끝까지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 주무관〉

○ 절대적인 시간은 공람기간이나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안을 다듬고 재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총괄적인 제한은 없군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이 문제가 양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원칙에 맞게 향후에 공개기준 설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사업 초기단계에서 검토 중인 안이라면 제9조제5호 사유에 해당해서 비

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비슷한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면 혼란도 많이 초래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비공개로,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 위원〉

- 청구인 이의신청에도 적혀 있듯이 법에 따라서도 사안이 종결됐을 때 그 시기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서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니까 의안번호 제2018-1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팀장〉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8-2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7년 10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세부내역서, 입금  
은행명 및 계좌번호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2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안전 소관 부서 팀장,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기후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 입니다. 반갑습니다.

〈○○○ 주무관〉

○ 자원회수시설팀 주무관 ○○○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2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10월분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지출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정산비 세부내역

서, 입금은행명, 계좌번호는 공개 시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상세내역서가 정산비 사용 적법여부 확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공개 시에도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에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희가 종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지출금액하고 입금은행, 계좌정보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입금은행하고 계좌번호를 공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출금액은 제외하고 은행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 쟁점이 있었습니다.
-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차이가 있어서 정산비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정산비와 판단을 달리하시는 부분입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정산비 내역 중에서 구체적인 항목하고 단가랑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민간위탁금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는데 비정산비는 말 그대로 위탁직원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산비라고 하면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용역계약을 한다거나 공공요금을 납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정산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 4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정산비 정산서류도 각 위탁사마다 내부의 특성에 따라 모두 동일한 양식이 아니고, 비정산비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 전에 강남 건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문내용 자체가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서 심의회에서 은행정보만 빼고 공개를 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라든가 총괄적인 내역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거래처 정보라든가 규격, 약품에 대한 비율 이런 것이 있어서 부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부분공개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

○ 정산비 집행은 각 업체가 임의로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 지출되고, 물품과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시 계약심사과에 의뢰해서 심사 후 승인통보를 해 줍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적요’ 란을 보면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약품비 이렇게 있는데, 그 항목이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거래처랑 얼마씩 계약하는지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공공요금 성격은 실제 쓴 양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약품비 부터 유지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은 저희가 승인해서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을 해서 분량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만약 그 정산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의성이 있다면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요, 각 항목, 거래처도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금액도 정액으로 그 한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면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주무관〉

- 공공요금 외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정해서 연간단가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가 체결한 연구용역이나 계약 같은 경우 세세한 항목까지 다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정보공개에 대한 다툼이 있고, 시빗거리가 있어서 계속 청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산비 내역이라는 것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 물건을 ○○, ○○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경영상 침해가 됩니까? 이것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위원〉

- 어떤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에 관한 정보인지 않습니까?

〈○○○ 위원〉

-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에 있는 내용은 그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고 정보가 되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의 정산 관련 항목은 그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 위원〉

- 시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런 것이 다 세세히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느냐 위탁에 의해서 집행하느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 차이입니다.

〈○○○ 위원〉

- 물품을 어디에서 사왔느냐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서

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공개결정을 하면 수탁업체가 제3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부서에서 굳이 비공개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우려하시는 바나 공개여부를 판단하신 근거가 저희 위원과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에게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십니까?

<○○○ 팀장>

- 위탁받은 회사에서는 개개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각 단가가 높거나 낮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 말씀은 공개여부 결정 과정에서 제3자 의견청취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 비정산비용의 경우 공개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회에서 비공개 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 팀장>

- 개략적인 사항은 보시다시피 다 공개했고, 청구인이 해당 회사 직원이나 관계자도 아닌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공개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 위원>

- 저희는 서울시민들한테 다 공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

- 그리고 협약서 30조를 보면, 시의 비밀사항을 수탁사에서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지, 업체의 비밀을 시가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비공개 근거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저도 특별히 비공개할 사유는 없고, 오히려 이것은 공익상으로 공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단가 이런 결정은 다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제 생각에 규격 정도만 비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규격이 민감한 정보입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업체하고 규격 중에서 둘 중에 한 부분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계약업체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괄로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위원〉

- 아까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다 공개하셨으면 아마 공개에 나와 있을 텐데요.

<○○○ 주무관>

- 세금계산서는 총괄자료에 대한 것이고, 각 계약의 구체적인 업체명은 포함이 안됩니다.

<○○○ 위원>

- 규격이 어떤 의미가 있죠?

<○○○ 팀장>

- 규격이 단가하고 결합되면 시설마다 상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업체들 간의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공개여부 결정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덤핑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에는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이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개결정에 감안해서 정보공개에 걱정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혹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각각 개별업체에서 세부항목을 얼마에 샀는지까지 공개되는 것은 법인의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공개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령죠?

<○○○ 팀장>

○ 네.

<○○○ 위원>

○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에 관한 실무를 하시는 담당자 분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규격을 비공개하고 나머지를 공개한다라는 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려하시는 바가 좀 해소가 되시겠습니까?

<○○○ 위원>

○ 규격 정보가 있어야 가격 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규격을 숨겨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각 제품 납품가격까지 다 공개가 되면 시장에 있어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 주무관>

○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지도·감독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구입하는 자체가..

<○○○ 위원>

○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말씀하신 두 번째 규격만 비공개하고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제가 볼 때 공개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공개를 하려면 확실히 해버리고, 안 하려면 ‘적절한 명분에 의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위원>

- 저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거래처 부분을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거래처는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 차라리 거래처를 비공개하고, 규격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 취지상 맞는 것이지, 규격을 없애면 굳이 공개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 위원〉

○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대로 공개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는 거래처명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격 부분과 종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제품이 특정이 되어서 대상업체를 비롯해서 거래처로 특정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공개될 수 있어서 규격이나 거래처 둘 중 하나는 부분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보면, 거래처 업체명은 비공개하고, 다만 규격과 금액만 공개되면 적정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니까 시민의 이익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거래처를 제외하고 공개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래처도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간사〉

○ 다시 또 이의신청 들어오지 않을까요?

〈○○○ 위원〉

○ 다음에 행정심판 하겠죠. 이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제3자인 업체에서 또 이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의안번호 제2018-2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은 부분인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그리고 이 건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비공개입니까?

〈○○○ 위원〉

- 네. 그것은 저번에도 비공개했습니다.

〈○○○ 위원〉

- 네. 동일하게 비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8-3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보고서 등

<○○○ 위원>

- 의안번호 2018-3호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계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세요?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사업팀장 ○○○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3호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방안보고서 및 아담주택 활성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세부시행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질의와 두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 부서 팀장께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협소주택은 90 $m^2$  이하 소필지에 집을 짓는 것으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용적률, 주차장 완화 문제가 따라 올 수 밖에 없는데,
-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 주차장을 확충 등에 관한 서울시 정책적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것이 비공개 부분이 있고 공개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면 다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보고서만 비공개하시고 수립계획 자체는 공개하신 것이죠?

〈○○○ 팀장〉

- 수립계획은 공개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경우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 중이고, 조례 개정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 단기간에 내부검토가 완료될 사항은 아님



니다.

<○○○ 위원>

- 내용을 보니까 되게 각 구청별로, 구별로 택지상황이나 주거상황까지 다 자세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외사례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분공개도 가능해 보입니다.

<○○○ 위원>

- 현황이라든가 객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항과는 좀 무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전체를 비공개해야 될지 아닐지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화 지원방안 자체가 미확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용역이 끝난지는 좀 오래됐네요. 3월 24일이면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 위원>

- 단순 연구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 의지가 있으니까 용역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용역결과가 공개되면 이대로 시행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 위원>

-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기준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그렇습니다.

<○○○ 위원>

- 진짜 민감한 정보가 좀 많네요.

<○○○ 위원>

- 네, 구체적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 팀장>

-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여파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절차상 대강의 예정시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 팀장>

-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책 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딱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 팀장>

-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 위원>

- 저는 방안 자체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협소주택 제도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도 없다는 점도 어려운 점입니다.

〈○○○ 위원〉

- 보통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프리즘이라든지, 정보소통광장에 올려서 정보 차원에서 연구성과물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과 자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결과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지원방안도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행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 시행여부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팀장〉

- 그렇죠.

〈○○○ 위원〉

- 용역결과가 시민의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이 사안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팀장>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